
자본시장연구원 종합감사 결과

2020. 10.

금 융 위 원 회
감사담당관실

1. 감사실시 개요

□ 감사배경

-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기(3~4년 주기) **종합감사 시기 도래**(직전 감사 2016.9월 실시)
- 연구사업, 예산집행·회계처리, 인력·조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량 제고를 도모

□ 법적근거

- **민법 제37조*** 및 **비영리법인 설립·감독규칙(총리령) 제9조**

*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
*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·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감사기간 : 2020.8.24.(월) ~ 8.28.(금), 5일

□ 감사대상 : 2016.9월~2020.8월 자본시장연구원 업무 전반

□ 감사요원 :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외 6명

-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6명, 한국공인회계사회 1명

□ 감사중점

- 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
-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
- 인력 및 조직관리 실태
- 예산집행·회계처리, 자금관리, 계약사무의 적정성
- 임직원 보수·복리후생 지원의 적정성
-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
- 정관 등 제 규정 준수여부
- 종전 금융위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

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① 인사·복무 및 채용 관련

□ 특별휴직자 관리 부실

- 특별휴직신청서에 작성하는 연구활동계획이 간략화되어 휴직자의 구체적인 연구활동계획을 알 수 없으며
 - 특별휴직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제출받지 않고 있어 특별휴직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
- ⇒ 특별휴직신청서 제출 시 구체적인 연구활동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토록 하고,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「특별휴직시행세칙」을 개정하는 등 특별휴직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 (제도개선)

□ 국외출장 보고서 지연 제출

- 자본시장연구원 「복무규정」 제13조제3항 및 「국외출장 운영기준」 제6조에 따르면 국외출장 직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
 - '16.1월~'20.6월까지 총64건(출장자 96명)의 국외출장 중 23건(출장자 31명)이 귀국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 제출되었고, 그 중 일부는 1~2년 이상 경과 후 제출되는 등 출장관리가 부실
- ⇒ 「복무규정」 및 「국외출장 운영기준」에 따라 국외출장자가 출장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 (주의)

□ 연구위원 채용 절차 부적정 및 채용서류 미보관

- '17년도 연구위원 채용시, 인사위원회가 선정한 채용세미나 참가자 10명 중 일부 고득점자를 불합격자로 처리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음
 - 한편, '17년 중 연구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1명을 수시모집으로 채용하였는데, 채용평가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배제하지 않고 실시하였음
- ⇒ 실질적인 채용 심사기구인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 서류를 관리하고, 채용세미나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며, 제척·회피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여 공정 채용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(주의)

□ 연구원 등 채용시 공개모집 예외규정 운용

- 자본시장연구원은 「직원채용요령」에 따라 연구원·일반직·별정직 직원 채용시 원칙적으로 구인광고 대행업체나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 공고를 거쳐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 - 결원시 채용공고 없이 대상자를 추천 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로 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운용하고 있음
- ⇒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구직자에게 지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연구원·일반직·별정직 직원의 경우에도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필요 (제도개선)

② 예산집행/회계처리 관련

□ 국외여비 지급제도 불합리

- 자본시장연구원은 국외여비 지급시 직급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, 숙박비·일비·식비 구분 없이 일일 체재비로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어, 숙박비가 실제 숙박일수보다 과다 지급되고 있음
 - 또한, 국외여비 지급 기준 지역을 일본/일본 외 지역으로만 구분하여 출장지의 물가 수준에 맞는 여비 지급에 한계가 있음
- ⇒ 국외여비지급 직급을 보다 단순화하는 한편, 국외여비 체재비를 숙박비, 일비, 식비로 구분하되, 숙박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고, 출장지 지역 구분을 세분화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한 실비가 지급되도록 「여비지급규정」을 개정할 필요 (제도개선)

□ 원고료 지급 기준 미비

- 자본시장연구원은 '16.1월부터 '20.6월까지 「중국금융시장포커스」 및 「이슈보고서」 발간 과정에서 원고 작성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지급 기준이 없어 원고료 지급액의 일관성이 없음
- ⇒ 원고 내용 품질의 제고와 다양한 자료의 게재를 위하여 합리적인 원고료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 (제도개선)

□ 법인카드 포인트 활용 방안 부재

- 자본시장연구원은 신용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 중인데,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제때 활용하지 않아 매년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고 있음
- ⇒ 수입조치, 결제대금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를 적시에 사용하도록 하고,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를 법인카드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(권고)

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

- 자본시장연구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시까지만 월할 계산하여 복지비를 지급하여야 하나, 특별한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잔여기간분까지 전액 지급함으로써 예산 낭비 초래
- ⇒ 중도 퇴직자의 맞춤형 복지비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「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」을 개정할 필요 (제도개선)

□ 학자금 지급제도 불합리

- 자본시장연구원은 「복지규정」 제12조 및 「학자금 지급기준」에 따라 임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, 고등학교 학자금 지급한도가 공립고등학교 학비보다 높아 타 금융관련 연구원 지원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
- ⇒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액의 차등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고시액을 반영하는 등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(제도개선)

□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공시 누락

- 자본시장연구원은 「공익법인회계기준」 제41조에 따라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관련 거래 내용과 법인세 비용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채택한 회계정책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, 2018·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음
- ⇒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필수 주석기재사항의 중요한 항목인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관련 거래 및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정책을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할 필요 (통보)

□ 미회수 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인식

- 자본시장연구원의 회계정책에 따르면 미회수 기부금수익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여야 하나 2016~2017년의 기부금수익 중 일부 기부금은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됨에도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음
- ⇒ 발생주의로 계상한 기부금수익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필요 (통보)

□ 사업비용의 배분 기준 미비

- 자본시장연구원의 회계정책에 따르면 공통비용은 「공익법인회계기준」 제30조에 따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별로 투입한 시간 등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에도, 사업비용을 대부분 고유목적사업에만 배분하고 기타사업에 배분하지 않고 있음
- ⇒ 사업비용에 대한 안분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이 되도록 할 필요 (통보)

□ 적극행정으로 기부금의 회비 인정

- 자본시장연구원은 사원기관이 납부하는 회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'19.5월부터 '20.4월까지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원기관이 납부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도록 함
- 이를 통해 사원기관의 회비를 기부금수익이 아닌 회비수익으로 실질에 부합하도록 회계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
사원들이 회비 전부를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(모범사례)